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tention.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활용 시 유의사항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다양한 민원사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업무참고자료입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안내의 목차 순서에 따라 업무유형별로 사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본 질의응답집에서 안내하는 사항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질의응답집의 사례를 모든 사례에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응답집은 2023년 기준 법령·고시·지침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향후 법령 등의 개정 시에는 본 사례집과는 달리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의 순서로 해석의 효력이 있으며, 질의응답집은 특정 사례에 따른 해설서일 뿐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5.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Contents. 목 차



Chapter 01. 공통

I. 가입

2

1. 지원대상

2

- Q1. 자격요건의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2
- Q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란? 3
- Q3. 과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경우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이 가능한지? 4
- Q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5
- Q5.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6
- Q6. 과거 통장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1인가구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중인데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 가능한지? 8
- Q7. Gateway 과정 참여자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8

2. 소득기준

9

- Q1. 가구원 중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9
- Q2.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9

3. 신청방법

10

- Q1.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구비서류 미제출 시의 민원처리 방법은?
* (참고)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2p 수급(권)자의 보장 신청과 접수 및 관리 절차 10

Chapter 01.
공통

- Q2. (현장접수) 주소지 시군구 외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1
- Q3.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 명의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은? 12
- Q4. 가입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13
- Q5. 자활근로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 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 통장 가입을 해야 하는지? 14
- Q6.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15

4. 복지로 16

- Q1. 복지로(온라인) 신청 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인증이 어려울 경우 신청 방법은? 16
- Q2.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신청확인, 취소, 서비스 상태 확인 방법은?
* (출처) 복지로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서비스 신청 16
- Q3. 소득재산신고 단계에서 전·월세거래정보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출처) 복지로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서비스 신청 17

II. 유지 18

1. 자격요건 18

- Q1. 통장명의자인 자녀가 군입대를 할 경우 유지 가능한지? 18

2. 지원금 기준 19

- Q1.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으려면 본인 적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19
- Q2. (희망저축 I, 청년내일) 자활특례자는 탈수급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지? ... 19
- Q3. (희망저축 I, 청년내일) 1인당 탈수급장려금 지원 금액은? 20

Contents. 목 차



Chapter 01. 공통

Q4.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Gateway 과정 참여자가 통장 사업 참여한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도 가능한지?	21
Q5.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자가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II·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자활참여 관련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22
Q6.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생성 기준은?	22
Q7. 내일키움장려금은 어떤 자활 사업단에서 적립하는지, 가입자 수만큼만 적립하면 되는지?	23
Q8. 내일키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24
Q9. 3월 본인 저축 후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는지?	24
Q10. 참여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25
Q11. 자활 사업단의 매출이 없다가 4분기에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수익금 발생시 적립하지 못한 1~3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을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26

3. 적립방법 27

Q1.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미납)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27
Q2. 내일키움수익금을 해당 분기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미적립분의 적립방법은?	28
Q3. 월 중간에 가입자가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는지?	29

4. 적립중지 30

Q1.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인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가 가능한지?	30
Q2. 적립중지 신청 시 적립중지 기간만큼 통장 만기일이 연장되는지?	31
Q3. 가입자의 적립중지 해제일이 통장 입금 마감일 이전(~22일)일 때 본인 적금을 필수로 입금해야 하는지?	32



Chapter 01.
공통

Ⅲ. 교육

33

1. 교육이수 기준

33

- Q1.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 영상은 전부 이수해도 되는지? 33
- Q2.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교육관리시스템(LMS)에 등록된 교육 수료 방법 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는지? 34
- Q3. (희망저축II, 청년내일)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35
- Q4. (희망저축II, 청년내일) 해지를 해야 하는데 교육이수 조건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6
- Q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서비스 이용시 필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7
- Q6.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통장을 유지할 수 없는지? 37

2. 교육방법

38

- Q1. 가입자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회원가입했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교육 수강신청 시, '확인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며 수강신청되지 않는 경우 방법은? 38
- Q2. 가입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 및 이수 가능한 교육 조회 방법은? 39
- Q3.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한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39
- Q4.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실적을 등록해야 하는지? 40

Contents. 목 차



Chapter 01.

공통

IV. 해지

41

- Q1. 가입자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의 부분 인출 신청 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지? 41
- Q2. 중도지급해지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41
- Q3. '지급해지'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42
- Q4. 통장해지자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한 경우,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42
- Q5. 가입자가 지급해지하여 지원금 수령 시 재산으로 포함되는지? 43
- Q6. '지급해지'가입자가 적금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같이 지급되지 않는지? 43

V. 예탁 및 반납

44

- Q1. 예산 사업코드를 1개로 편성 및 집행할 경우, 예탁금도 1개의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지? 44
- Q2. 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지? ... 45
- Q3. 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이 늦어져 미적립된 경우 처리방법은? 46
- Q4. 근로소득장려금 오류예탁(과예탁, 타 계좌이체 등) 시 처리 방법은? 47
- Q5.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가능한지? 47
- Q6.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잔액, 이자 및 환수액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반납 요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48
- Q7.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잔액 등에 대해 반납요청 시 반납 요청금액에 대해 원단위금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48



Chapter 01.
공통

VI. 자산형성포털

49

1. 가입관련

49

- Q1. 자산형성포털 가입 대상자는? 49
- Q2. 자산형성포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49
- Q3. 자산형성포털의 MY서비스 이용 대상은? 49
- Q4. 가입자가 네이버 인증으로 자산형성포털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50
- Q5. 자산형성포털 회원탈퇴 방법은? 50

2. 가입정보·지원금 확인

51

- Q1. 가입자 본인 정보 수정 방법은? 51
- Q2.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은 확인 방법은? 51
- Q3.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 수강 완료 시 자산형성포털에서
이수내역 확인 방법은? 51

3. 적립중지 및 해지

52

- Q1. 적립중지 신청 및 해제 방법은? 52
- Q2. 적립중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52
- Q3. 해지 신청 방법은? 53
- Q4. 해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53
- Q5.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 및 해지 신청서 등 각종 서식 확인 방법은? ... 53

Contents. 목 차



Chapter 02.

희망 저축 계좌 I

I. 가입

56

- Q1.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신청이 가능한지?
- 자활급여특례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대상자임 56
- Q2. 동일 주소지에 3인 가구 중 자녀(1인)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 되어 남은 가구원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가구원 수는?
- 통장 가입자는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원이며, 자립지원 별도가구인 자녀(1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상태임 56

II. 유지

58

- Q1. 5인 가구이며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해당 자녀가 해외로 간 경우에도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58
- Q2. 희망저축계좌 I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59
- Q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이 누락된 경우 소급이 가능한지? 60
- Q4. 통장가입한 달에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된 경우 처리방법은? 61
- Q5.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금액을 생성해야 하는지? 61
- Q6. 탈수급 이후 소득상한 이하로 사업 유지 중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62
- Q7. 희망저축계좌 I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추후 신고시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62
- Q8.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63
- Q9.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가 탈수급 후 소득확인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64



Chapter 02.

희망
저축
계좌 I

III. 해지

65

- Q1. 희망저축계좌 I 에 가입한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종결 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환수해지 대상자인지? 그렇다면 몇
개월 이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되는지? 65
- Q2.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지? 65
- Q3. 자활특례자, 이행특례자가 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66
- Q4.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부지급해지 후 희망저축계좌 I 에
가입한 경우, 일부지급해지가 가능한지? 67
- Q5.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가입한 가입자가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적립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68
- Q6.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에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69
- Q7. 희망저축계좌 I 만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탈수급 소득요건에는 미달되나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금액을
기타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69
- Q8.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가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70
- Q9. 통장 가입자가 혼인으로 가구원 수 변동되어 탈수급되고, 남은 가구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되는지? 71
- Q10. 탈수급 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71
- Q11.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72

Contents. 목 차



Chapter 02.

희망 저축 계좌 I

- Q12. 희망저축계좌 I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누적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지? 73
- Q13. 탈수급 후 소득초과로 인한 중도 지급해지 시 탈수급장려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73
- Q14. 자활사업 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 I 가입하고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자활특례전환 또는 탈수급을 했을 경우 자활참여는 바로 종료인지? 아니면 자활 종료 없이 탈수급 요건 충족 시 희망저축계좌 I 만 지급해지 가능한지? 73



Chapter 03.

희망 저축 계좌 II

I. 가입

76

- Q1. 신청자가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II 신청할 수 있는지? 76
- Q2. 희망저축계좌 II를 가입한 가구의 가구원이 이혼,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보장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가구원이 희망저축계좌 II를 신청할 수 있는지? 77
- Q3. 신청자의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만 특례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적합으로 볼 수 있는지? 78
- Q4. 4인 가구에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받아 생계·의료급여는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만 보장하고, 주거급여는 자녀를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희망저축계좌 II를 신청할 수 있는지? 79
- Q5. 모(母)와 자녀(청년) 2인 가구로 자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모(母)가 희망저축계좌 II 가입하고,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지? 80



Chapter 03.

**희망
저축
계좌Ⅱ**

- Q6.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타 가구원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81
- Q7.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무엇인지? 82
- Q8. 농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이 가능한지? 83

Ⅱ. 유지 **84**

- Q1. 가입자가 직접 자립역량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이수해도 인정 가능한지? 84
- Q2. 가입자가 자립역량교육 미참여 시 통장을 유지할 수 없는지? 84

Ⅲ. 해지 **85**

- Q1. 확인조사 기간이 아닌데 가입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넘는다며 지급해지 신청을 한 경우 중도지급해지 처리가 가능한지? 85
- Q2. 3년 만기 전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적금을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86
- Q3.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가입자가 중도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중 결정할 수 있는지? 87

Contents. 목 차



Chapter 0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I.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관련

90

- Q1. 청년도약계좌도 '23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 가능한지? 90
- Q2.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입자가 추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90

II. 가입

91

1. 지원대상

91

- Q1.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중 타보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91
- Q2.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91
- Q3. 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2
- Q4.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지? 92
- Q5. 4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가 희망저축계좌 I 가입 중이며, 해당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가구에 청년이 2명인 경우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93
- Q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94
- Q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수 있는지? 96



Chapter 0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 소득기준 97

- Q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산출기준은? 97
- Q2. 신청자가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확인 기준은? 98
- Q3. 신청자가 대학원생 연구비 등 기타 소득만 발생 시 신청 가능한지? 98

3. 신청방법 99

- Q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99
- Q2. B지역에서 타보장(주거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지원 중이나 신청자는 A지역, 부모 및 타 가구원은 B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103

4. 심사 104

- Q1. 신청자가 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군입대하였을 경우 적합으로 결정처리해도 되는지? 104
- Q2.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동시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104
- Q3. 심사표 항목 중 저축지속가능성(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105
- Q4.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동점자 발생 시 어떤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106

Ⅲ. 유지 108

1. 지원금 기준 108

- Q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본인 소득이 월 10만원 이하 발생 시에도 근로소득공제금이 지원되는지? 108

Contents. 목 차



Chapter 0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Q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나, 유지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지원할 수 있는지? 109
- Q3.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109
- Q4.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적립할 수 있는지? 110

2. 적립방법 110

- Q1. 가입자 가구에 전월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당월에 과지급 분 차감하여 생계급여 미지급 예정으로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예시) 3월 생계급여 과지급, 4월 과지급 분 차감하여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110

3. 자격요건 111

- Q1. 가입 당시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근로기준 상 소득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유지 시에도 차상위 이하(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는지? 111
- Q2. 워킹홀리데이의 사유로 해외 출국한 가입자가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다고 확인되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12
- Q3. 가입 이후 정기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113
- Q4. 확인조사를 통한 중도지급해지(유지기준 소득상한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 제출 시 유지할 수 있는지? 114



Chapter 0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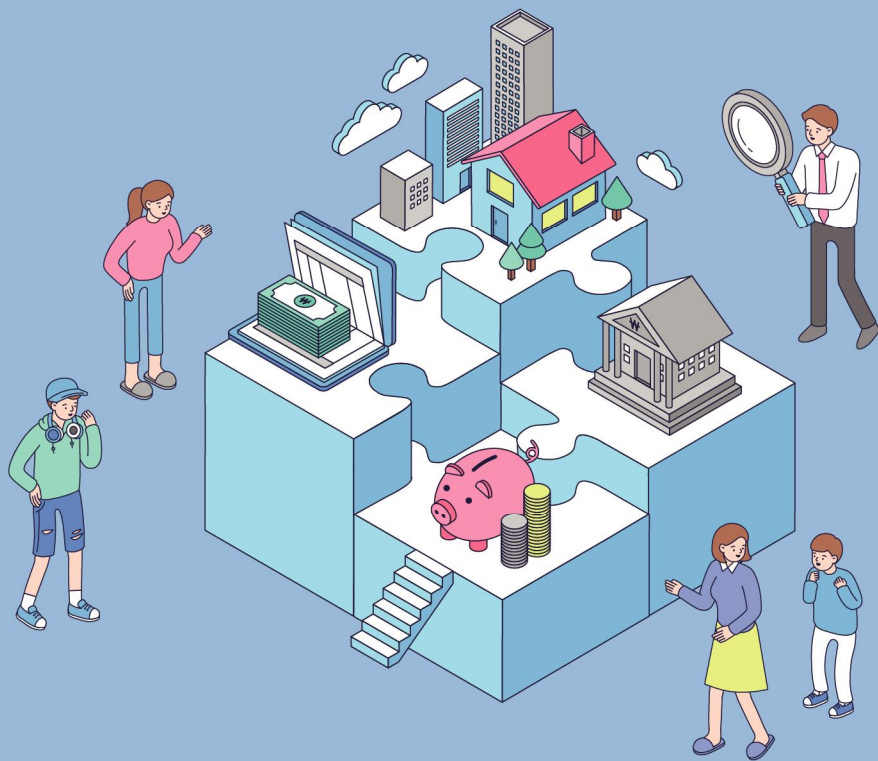
4. 적립중지 115

- Q1.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15
- Q2.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사용가능한데 1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116
- Q3. 가입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중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117

IV. 해지 118

- Q1. 유지 중에 만 34세(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는지? 118
- Q2.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유지기준 (소득상한)초과로 인한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19
- Q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해지해야 하는지? 120
- Q4. 해지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21
- Q5. 지급해지 신청 시 사용용도증빙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 121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1

공통

I
가입

II
유지

III
교육

IV
해지

V
예약 및 반납

VI
자산형성포털

01. 공통



I. 가입

1. 지원대상

Q1 자격요건의 제외업종(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nswer.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 지원사업과 같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질의응답

? 복권판매업도 사행성 업종에 해당되는지?

!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하위 업종에 '복권 발행 및 판매업(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복권 판매소

? 콜라텍에서 일하는 가입자가 있는데, 제외업종에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치성·향락업체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접객시설과 함께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각종 형태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업(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 주점)이 해당됩니다.

제외 업종	가능 업종
요정, 한국식 접객 주점, 룸살롱, 바(접객 서비스 딸린), 서양식 접객 주점, 비어홀(접객 서비스 딸린), 무도 유흥 주점, 카바레, 극장식 주점(식당) 클럽, 나이트 클럽 등	일반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 오락장 운영업 등

**Q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이란?

**Answer.**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 임용,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근로빈곤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 이탈주민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취업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저소득층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나,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ex. 공립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상담센터 등 운영을 위한 인력채용 등) 등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중앙정부·지자체에서 다양한 직접일자리사업이 운영되므로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가 유지 중 재취업이 어려워 잠시 공공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해지해야 하는지?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유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이 가능한지?



대학교 자체 내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금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과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경우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이 가능한지?



Answer.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거나 가입 중인 대상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중복관리 대상사업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일하는 청년통장, (현)청년 노동자 통장’을 지원받았는데, 가입 가능한지?



해당 통장사업은 중복으로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종료 후에도 가입 중에도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자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인데,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중복 가입 가능한지?



청년희망적금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국세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통장 유지에 문제가 되는지?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중복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제외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Q4**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Answer.**

-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따라 자산 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가구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가구의 청년은 지원요건 충족 시 가구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 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의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시〉 가입자명 예시

- * 희망저축계좌 I : 김자산 / 청년내일저축계좌: 김자산
→ 동일명의로므로 신청 불가
- * 희망저축계좌 I : 김자산 / 청년내일저축계좌: 김형성
→ 동일명의 아니므로 신청 가능



유사 질의응답



희망키움통장 I (또는 II) 가입 가구의 청년이 가구 분리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 ! 희망키움통장 I (또는 II)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기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해당 통장 참여 중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구분리된 자녀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 I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환수해지	○		○		○	
희망키움 통장 II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환수해지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 I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 II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
	지급해지	○	○	○	○	×	○
	환수해지	○	○	○	○	○	○



Q6

과거 통장 사업 참여이력이 없는 1인가구로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중인데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 가능한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나, 자활 근로소득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단,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자활근로에 참여 중인 경우 희망저축계좌 I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Gateway 과정 참여자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Answer.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합니다.
 - 단,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사업단 배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칭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2. 소득기준



Q1

가구원 중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Answer.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가구의 통장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Answer.

- 상여금이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 따라서 명절상여금도 근로·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조사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하고,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근로·사업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가) 상시근로자 소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3. 신청방법



Q1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구비서류 미제출 시의 민원처리 방법은?

* (참고)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2p 수급(권)자의 보장 신청과 접수 및 관리 절차



Answer.

- 신청자가 자선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장기관은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미구비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 다음, 자료제출이 완료 후 행복e음으로 접수처리 하여 공적자료 조회와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자료제출 요구는 구두·전화·서면·문자·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요구한 자료, 요구 일시, 요구자,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을 상담내역에 기록·관리합니다
- 특히,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따른 각하(부적합)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소명 요청했음을 입증할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서면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신청일과 접수일이 차이나는 경우 상담내역 작성 시 상세히 기록 관리



유사 질의응답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보완요청에도 구비서류 미제출(보완)시 처리방법은?



보완요청 기한 내에도 자료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복e음에서 접수 및 부적격 처리합니다.

**Q2****(현장접수) 주소지 시군구 외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Answer.**

-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신청인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p.35 업무처리 절차**1. 목적**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주소지 관할·비관할 시·군·구의 역할**가. 주소지 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안내 및 상담
 - 안내 가능한 사업내용 및 수급자 선정 관련 일반적인 상담 진행 신청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서류의 이송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서류의 보완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요구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 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역할

- 접수
 - 타 주소지에서 신청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접수처리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이송받은 문서(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급여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접수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접수 처리하며 이때 접수일자(민원처리 산정의 기준일이 됨)
 - ※ 급여지급기준일은 신청일이 되므로 혼선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보완
 - 주소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 처리
 - 서류의 보완 요청 시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지자체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비관할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함을 안내
 - * 신청인은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 후 구비 서류 제출 가능
- 보장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보장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
 - * 통지의 방법, 통지기일, 통지의 내용 등



Q3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 명의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는 신청자로 가입자는 자녀로 작성하며 이후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수(신청인=가입자)



유사 질의응답



(청년내일)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인 가구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신청자=가입자)



(희망저축 I·II)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이나 최종 선정결과 적격일 때, 통장 개설 불가한지?



통장 개설 가능 여부에 따라 통장 개설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가입 후에도 압류 해제가 불가할 경우 환수해지 사유입니다.

- 또한 가입자는 환수해지를 하더라도 압류해제가 되기 전까지 본인 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사업 참여 후 반드시 압류 해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4 가입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Answer.

-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원~50만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예시. 본인저축액에 따른 장려금 생성 여부

- ✔ 본인저축액 9만원 입금 → 장려금 생성 기준 미달
- ✔ 본인저축액 15만원 입금 → 장려금 생성 기준 충족



유사 질의응답

? 적금을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입자가 매달 납입 금액을 다르게 계획한 경우, 행복e음에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행복e음 시스템에 10만원~50만원 사이의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등록하여도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단, 만원 단위)



Q5

자활근로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가입 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 통장 가입을 해야 하는지?



Answer.

- 자활근로참여자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보장가구원 명의로 가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을 가입한 가구원 중에 가입자가 아닌 타 가구원이 자활근로를 참여할 경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만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됩니다.



Q6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압류방지 설정이 가능한지?



Answer.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통장이 압류방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통장압류 집행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그간, 법원 판결에 의한 통장압류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와 같이 최저생계를 위한 매월 지급형 금액이 아닌 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압류를 금지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압류 통보를 받은 가입자라도 일정기간 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계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이므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 I·II) 가입대상자 선정 후, 가입대상자가 압류 위험으로 인해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통장 개설 이전 행복e음에서 가입자 변경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구원 수 산정시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일가구 기준을 준용합니다.

* 통장 개설 후 명의변경 불가, 개설 후 변경 요청 시 해지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



은행에서 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류, 가압류 등은 환수해지 사유로써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경우 가입자와 상담하여 확인 후 환수해지 등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안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합니다.

* 직권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4. 복지로


Q1

복지로(온라인) 신청 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인증이 어려울 경우 신청 방법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가구재산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복지로(온라인) 신청 시 본인 및 보장가구원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하므로 [본인확인동의]가 안 될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기 작성 후 서명 필수


Q2

신청자가 서비스 신청 완료 후 신청확인, 취소, 서비스 상태 확인 방법은?

* (출처) 복지로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서비스 신청


Answer.

- **(신청확인)**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현황에서 접수건 상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항목 클릭 시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신청 완료와 동시에 취소 및 수정 불가)
- **(신청취소)** 신청서 취소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취소(반려)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상태 확인)**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완료 시 기본적으로 신청상태는 '접수대기'상태가 되며, 지자체의 진행상태에 따라 '접수', '조사진행중', '완료(종료, 종결)'등으로 변경됩니다. 신청완료 후 지자체 시스템(행복e음)으로 전송까지 10분 가량 소요됩니다.(시스템 작업 시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Q3****소득재산신고 단계에서 전·월세거래정보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출처) 복지로 >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서비스 신청

**Answer.**

- 전월세거래정보는 이전 내역까지 전체로 조회되며, 현재에 맞는 내용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 등 현재 내용과 다른경우는 '선택'하지 않고 전세/월세/자가 선택을 하여 직접 서류첨부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II. 유지

1. 자격요건



Q1

통장명의자인 자녀가 군입대를 할 경우 유지 가능한지?



Answer.

- 의무복무에 따른 병사월급은 국가보조금의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구 단위 통장인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은 자녀가 군입대를 하더라도 동일 가구원 내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유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개인 단위 통장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유지기준을 적용하여 군입대 시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군입대 적립중지(2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군입대 적립중지 미신청 시 환수해지 사유 발생)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직업군인과 사회복지요원이 수급(권)자와 동일 보장 가구원이 될 수 있는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

-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지요원은 월급을 받고 가정 등에서 출퇴근하는 등 현역군인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장 가구원도 될 수 있고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자라도 될 수 있음

* 장기하사(직업군인),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군인이 아니라 직업군인임

구분	보장가구 포함여부	비고
현역군인	X	의료급여 특례 有
직업군인	✓	
사회복지요원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일체의 비용 국가 부담 학교 재학생	X	

2. 지원금 기준


Q1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으려면 본인 적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Answer.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①매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② 각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기준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금액 생성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Q2

(희망저축 I, 청년내일) 자활특례자는 탈수급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닌지?


Answer.

-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자활특례자가 해지 시에도 생계·의료급여를 유지하고 있다면 탈수급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을 모두 벗어나야 탈수급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는 반드시 탈수급(생계·의료 모두)을 하여야 지급해지 및 탈수급장려금 지원 가능
 -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 중 지급해지 요건으로 탈수급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적립된 탈수급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수급(생계·의료 모두) 필수



Q3

(희망저축 I, 청년내일) 1인당 탈수급장려금 지원 금액은?



Answer.

- 최대 72만원 지원합니다.('22년 가입자도 해당)
- 탈수급장려금은 가입 후 첫 월 24만원 적립, 지급해지 시 차액분 48만원을 일괄 적립 및 지급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입한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가입 중간에 소득초과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벗어나 지급해지한 경우 탈수급 장려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지급해지자의 탈수급 장려금은 최대 72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탈수급장려금

☑ **탈수급장려금**

-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 ③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Q4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Gateway 과정 참여자가 통장 사업 참여한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도 가능한지?



Answer.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Gateway 과정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모두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활근로사업단 유형 및 특징

유 형		운영목적 및 특징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업 그 레 이 드 형	시장 진입형	총 사업비의 30%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지급대상
	사회 서비스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지급대상
	인턴· 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인턴형	대상아님
			복지·자활 도우미형	대상아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대상아님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대상아님
Gateway 과정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		대상아님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지급대상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지급대상



유사 질의응답

❓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되는지?

❗ 자활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은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사회서비스형 비수익형도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대상입니다.



Q5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자가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II·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자활참여 관련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nswer.

-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자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신규 사업의 경우 가입자의 특성에 맞춰 추가지원금이 지원되므로, 가입자가 자활참여자라면 자활참여 관련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가능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계좌 I 참여하여 지급해지한 자활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II를 신청하여 가입하였을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할 수 있는지?



자활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II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가입하였다면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생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생성합니다.



Q6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생성 기준은?



Answer.

- 가입 후 전월 12일 이상 참여일수가 있는 참여자만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생성됩니다.
 - 가입 월에 자활근로사업단 전월 12일 이상 참여일수가 없는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는 익월에 생성됩니다.
- 또한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미생성된 경우 자활정보시스템 [매출관리 > 매출정산관리 > 내일키움통장관리 > 자산형성연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7

내일키움장려금은 어떤 자활 사업단에서 적립하는지, 가입자 수만큼만 적립하면 되는지?



Answer.

- 내일키움장려금은 분기별 매출 정산을 통해 적립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를 재원으로 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단이 정산 대상이며, 「자활사업안내 I」 매출 정산 기준에 따라 매 분기별 매출정산시 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출액 수준, 가입자 수 등과 관계없이 매출이 있는 사업단(사회서비스 비수익형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칭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Gateway, 인턴·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Q8 내일키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Answer.

- (구)통장의 경우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에 따라 매칭되는 내일키움장려금의 적립금은 유형별로 상이하였으나,
 - '22년부터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지원하는 내일키움장려금은 자활사업단 유형과 상관없이 20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단, Gateway,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업단 제외)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가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내일키움장려금은 20만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Q9 3월 본인 저축 후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는지?



Answer.

- 3월에도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됩니다.

**Q10****참여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Answer.**

- 원칙적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적립되지 않으나, 센터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방식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의 하한 기준은 없으며, 상한액은 월 15만원입니다.

**참고1.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내일키움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Gateway,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 I 참고

내일키움수익금

-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I) 참조

**참고2. 참고사항**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주는 지원금으로,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참여 달에는 근로소득장려금만 지원하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합니다.

* 단, 매출미발생 사업단(비수익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에게 센터 규정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활 사업단의 매출이 없다가 4분기에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수익금 발생시 적립하지 못한 1~3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을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Answer.

- 매출정산이 완료된 전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은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 매 분기별 매출은 100% 정산하여야 합니다.(자활사업안내 I ‘매출 정산’ 참조)
 - 해당 분기별 정산 절차를 통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해당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참고. 「2023년 자활사업안내 I」 매출 정산

☞ 매출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역자활사업비로 정산함

- 중앙자산키움펀드 : 매출액의 일부를 중앙으로 조성하여 참여자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등 지원에 활용
-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매출액의 일부를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참여자 인센티브,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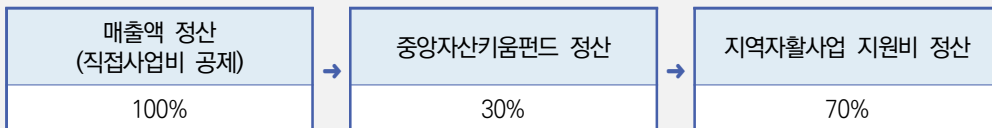
* 지역자활사업지원비 = 매출액 - 중앙자산키움펀드

☞ 매출액 정산 절차

- (직접사업비 사전 공제) 매출액 중 직접사업비*를 제한 후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 정산

* 직접사업비 = 재료비(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 참여자 시간외 수당(연장, 휴일수당)

- 발생시점에 사용
- 직접사업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매출액 정산 절차



* 매출액으로 발생한 이자는 지역자활사업지원비로 조성함

☞ 매출 과오납금 처리

- 매 분기별 매출을 100% 정산하고, 정산 오류 확인 즉시 오류에 해당하는 분기 정정

3. 적립방법

 **Q1**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미납)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Answer.

-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의 적립금이 잔액부족 사유로 25일에 입금되었는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급 가능한지?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 이내에 입금한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기간 내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일이 휴일로 가입자가 은행 방문 불가하여 본인 적립금 입금하지 못했는데, 23일 월요일에 입금해도 되는지?

 22일이 휴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입금 가능합니다.

- (예시) 2023년은 4월 4.24(월), 7월 7.24(월), 10월 10.23(월)까지 입금 가능

구분	본인저축 납입
4월	3.23(목)~4.24(월)
5월	4.25(화)~5.22(월)
6월	5.23(화)~6.22(목)
7월	6.23(금)~7.24(월)
8월	7.25(화)~8.22(화)
9월	8.23(수)~9.22(금)
10월	9.23(토)~10.23(월)
11월	10.24(화)~11.22(수)
12월	11.23(목)~12.22(금)



Q2

내일키움수익금을 해당 분기에 적립하지 않은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미적립분의 적립방법은?



Answer.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는 입금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기에 적립을 못하여도 분기별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 다만, 내일키움수익금은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적립이체가 원칙이므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분기별 정산시 참여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1분기 매출 정산 후, 4월에 가입자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이체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Q3**

월 중간에 가입자가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는지?

**Answer.**

- 내일키움수익금은 가입자가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Gateway,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월 중간에 자활근로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경우 12일 이상 참여한 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적립합니다.
 - 다만, 유형 변경이 이루어진 해당 월의 총 근무 일수가 12일 이상이나 각각의 사업단만 보았을 때 12일이 안되는 경우(ex. A사업단 8일→B사업단 6일), 근무 일수가 더 많은 사업단(ex. A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적립하고,
 - 만약 각각의 사업단에 참여일수가 동일한 경우(ex. A사업단 6일→B사업단 6일) 변경된 사업단(ex. B사업단)에서 적립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1월 내 A 자활근로사업단에서 5일 근무하고, B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0일 근무한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는지?



B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합니다.

4. 적립중지



Q1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인 경우 군입대 적립중지가 가능한지?



Answer.

- 군입대 적립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하여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 I·II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3년) 중 6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 I·II의 경우 가구단위 사업이므로 군입대를 한 자녀를 제외하고 보장가구 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 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 필수
 -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Q2****적립중지 신청 시 적립중지 기간만큼 통장 만기일이 연장되는지?****Answer.**

-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으로 동일하며 적립중지 기간에는 본인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금도 당연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됩니다.

**유사 질의응답**

군입대 적립중지(2년) 중인 가입자가 전역 후 적립중지 기간이 남았음에도 적립중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해제 가능한지?



군입대 적립중지(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전역 후 적립중지 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가입자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행복e음에 적립중지 해제를 등록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불가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Q3

가입자의 적립중지 해제일이 통장 입금 마감일 이전(~22일)일 때 본인 적금을 필수로 입금해야 하는지?



Answer.

- 적립중지는 일자 기준으로 등록/해제되기 때문에 적립 월 1개월 적용 기준 전월 23일 ~ 당월 22일 사이에 적립중지가 해제되었을 경우 당월분을 입금하여야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시. 적립중지 해제 후 본인 적금 입금

✓ (적립중지 해제일) '23. 3. 7.

✓ (본인적금 입금일) '23. 3. 8. ~ '23. 3. 22. 까지 3월분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유사 질의응답



적립중지 기간 중 지자체 집합교육이 개설되는데 적립중지 가입자가 참석할 경우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적립중지 기간도 가입자의 통장 유지기간에 포함되므로 적립중지 기간동안 집합 및 온라인 교육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저축계좌 I 통장 가입자는 희망 시 수강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여도 의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저축계좌 I 통장 가입자는 필요시 수강이 가능함.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여도 의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III. 교육

1. 교육이수 기준

Q1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 영상은 전부 이수해도 되는지?



Answer.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수강신청 > 교육대상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각 강의를 눌러 '교육 소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본인이 가입한 통장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소개 화면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포털소개

수강신청

나의 강의실

커뮤니티

수강신청

전체교육

교육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교육대상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자활통사자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춘시대

청춘시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

수강신청

신청기간

강의기간

교육정보 요약

교육년도	2023년 - 1기	교육원형	제한없음
교육장소	온라인	교육장소 상세	해당없음
교육시간(분)	96분	이수시간(분)	96분
수료증 발급 여부	발급		
교육대상자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자활도우미), (참여자)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참여자)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통사자) 자활기업, (통사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령기관, (통사자) 광역자활센터, (통사자) 공무원, (통사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통사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반회원		
수료기준	교육 모두 이수		
교육담당자	자산형성지원센터 연락처 1522-3690		

교육소개

청춘시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활역량교육

* 희망키움통장 I·II·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유·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이수 가능



Q2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교육관리시스템(LMS)에 등록된 교육 수료 방법 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II는 외부 유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의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I·II 가입자의 경우, 외부 유관기관 교육을 이수한 내역도 LMS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립역량교육

구 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 역량교육	지급조건적용	의무 없음	0	0
	교육시간		10시간	10시간
	집합교육		의무 없음	해당 없음
	교육방법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실적등록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자동 등록



유사 질의응답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지침에 명시된 유관기관 교육 외에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을 이수해도 인정이 되는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II·내일키움통장 대상자의 경우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되며, 집합교육 2회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Q3**

(희망저축Ⅱ, 청년내일)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는 온라인 10시간 또는 집합교육 10시간으로 이수 시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교육 이수시간

- (의무이수과정)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희망저축계좌Ⅱ) 10시간 모두 동영상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10시간 모두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

📌 교육 방식

-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포털(LMS 연동)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된 기타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 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LMS 내의 동영상 교육 이수

* 기타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Q4

(희망저축Ⅱ, 청년내일) 해지를 해야 하는데 교육이수 조건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nswer.

- 원칙적으로는 환수해지를 해야 하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하는 경우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희망저축Ⅱ 가입자 중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의 경우, 유예기간 내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계획이 없을 시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여 해당 집합교육에 참석 또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통해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는 타 지자체 집합교육 참석한 대상자의 명단 및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받아 반드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이수 현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립역량강화 교육 관련

-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지급해지조건 충족으로 인정
- * 가입자가 소속된 지자체 내에서 집합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타 지자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료증, 참석확인증, 참석명단 등)로 확인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자산형성 포털-LMS의 교육 외 외부의 유사교육을 이수하였어도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Q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서비스 이용시 필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nswer.**

-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서비스는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해 ① 회원가입, ② 교육이수 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6**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통장을 유지할 수 없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 의 경우, 교육 이수 여부가 통장 유지 조건은 아닙니다.
 -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등은 가입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희망저축계좌 I 을 통한 자립성공을 위해 가급적 모든 가입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 단,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2. 교육방법



Q1

가입자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회원가입했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교육 수강신청 시, ‘확인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며 수강신청되지 않는 경우 방법은?



Answer.

- ① 가입자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회원가입 시 선택했던 ‘소속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속유형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본인인증 > 소속유형]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시된 소속유형 중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일반회원”으로 선택해야 하며, 일반회원 선택 시 기관명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입력을 권장드립니다.
- ② 또는 해당 교육의 이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 수강신청 화면에서 교육 대상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가입자가 수강신청을 못하는 경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1대 1 문의 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가입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 및 이수 가능한 교육 조회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조회되는 교육은 모두 수강 가능하며, 확인되는 목록 중 원하는 교육의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사이트로 이동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별도 회원가입 필요**



유사 질의응답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가입이 어려운 경우, 비회원으로 교육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 !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내 [교육자료] 과정으로 회원가입 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교육이수 후 수강확인증을 다운로드 및 작성한 자료를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반드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필수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Q3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한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공지사항 > 게시판]에서 '자산형성포털 이용안내' 매뉴얼을 다운로드 후 [MY서비스 > 교육관리]에서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실적을 등록해야 하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직접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교육실적이 등록되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 실적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집합교육을 이수했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비회원용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의 교육 실적을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가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역자활센터로 수료증 제출 후 담당자가 시스템에 교육 내역 등록 시 반영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가입자가 교육이수(가구원 대리이수 불가)

IV. 해 지


Q1

가입자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의 부분 인출 신청 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지?


Answer.

- 통장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0만원 제외) 출금이 가능하도록 '중도인출(분할해지)'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 승인 없이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가 중도인출(분할해지) 중 전액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중도인출(분할해지)은 1회 납입분인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가능합니다. 제한 설정이 되어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가입기간 10개월, 본인저축액 10만원씩 저축하여 총 100만원일 때,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 중도인출 가능(단, 중도인출(분할해지)은 참여기간 중 1회만 가능함을 유의)


Q2

중도지급해지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Answer.

-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된 시점에 전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대상자별 상이)을 지급하고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도지급해지가 된 이후에도 가입자 본인 적금계좌는 36개월간 저축이 가능합니다.

Q3 '지급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Answer.

- 사업 및 해지 유형에 따른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지급해지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추가서류	-	자금사용계획서	



유사 질의응답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인 1계좌 상품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 해지 완료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4 통장해지자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한 경우,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Answer.

-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할 경우,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가입자 해지 실행시(지원금 지급 시) 지급오류가 발생되어 지원금 지급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가 이미 입출금 통장을 해지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가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동일은행 또는 타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도 가능)을 제출받아 자활정보 시스템(자산형성)에 입력하면 해지 일정에 맞춰 제출한 대체계좌로 지급처리 됩니다.
 -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해지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해지 신청 불가기간에 업무 처리 필요 시 지자체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해지 신청 시 '자산형성포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Q5****가입자가 지급해지하여 지원금 수령 시 재산으로 포함되는지?****Answer.**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 (희망저축계좌 I) 지급해지 시 탈수급 필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시 탈수급 필수요건 아님

**Q6****‘지급해지’가입자가 적금 해지 시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같이 지급되지 않는지?****Answer.**

- 가입자는 가입 시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정부지원금 입금 계좌)와 적금계좌(본인 적립금 입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지’시 두 계좌를 모두 확인해야 본인적립금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해지 이후 정부지원금은 입출금계좌로 입금처리되며, 본인적금계좌는 별도로 직접 해지 처리 필요합니다.

**유사 질의응답****가입자가 본인적립금 계좌를 해지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 적금해지는 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뱅킹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하나은행 방문하여 해지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 및 통장(입출금 통장, 적금통장)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지 신청 후 본인적립금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가입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로 해지 알림 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를 통해 변경된 연락처 공지하여야 해지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산형성포털에 가입한 가입자는 직접 연락처 변경 가능합니다.

V. 예탁 및 반납


Q1

예산 사업코드를 1개로 편성 및 집행할 경우, 예탁금도 1개의 계좌로 이체하면 되는지?


Answer.

- 예산 사업코드와 예탁금 입금계좌는 별개로 기존사업(희망키움 I, 희망키움II, 내일키움, 청년희망, 청년저축)은 사업별 계좌로 예탁하고, 신규사업(희망저축 I, 희망저축II, 청년내일저축)은 1개의 단일(통합)계좌로 예탁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사업	계좌	신규사업	계좌
희망키움 I	A 계좌	희망저축 I · 희망저축II · 청년내일저축계좌	F 계좌 (단일계좌)
희망키움II	B 계좌		
내일키움	C 계좌		
청년희망키움	D 계좌		
청년저축	E 계좌		

Q2 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로 입금만 하면 되는지?



Answer.

- 지자체에서는 예탁금 입금과 더불어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탁금 입금 및 예탁 알림 공문이 확인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입 처리 후 해당 지자체 예탁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유사 질의응답

? 예탁금 입금과 공문 발송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예탁금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매월 말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이며, 공문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3년 예탁금 접수 마감일 기준

* '23년 4월 본인저축 납입일이 3.23(목)~4.24(월)이므로 예탁금 접수 마감일은 4.24(월)까지 공문접수, 예탁필수

구분	본인저축 납입	예탁금 접수 마감일
4월	3.23(목)~4.24(월)	4.24(월)
5월	4.25(화)~5.22(월)	5.22(월)
6월	5.23(화)~6.22(목)	6.22(목)
7월	6.23(금)~7.24(월)	7.24(월)
8월	7.25(화)~8.22(화)	8.22(화)
9월	8.23(수)~9.22(금)	9.22(금)
10월	9.23(토)~10.23(월)	10.23(월)
11월	10.24(화)~11.22(수)	11.22(수)
12월	11.23(목)~12.22(금)	12.22(금)

* 위 예시는 '23년 기준이므로 매년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 일정을 반드시 참고

**Q3****근로소득장려금 예탁이 늦어져 미적립된 경우 처리방법은?****Answer.**

- 예탁이 늦어져 당월 예탁금 잔액부족으로 미적립된 경우, 예탁금 수입 결의 후 적립대상 지원금만큼 예탁금 잔액이 충분함을 확인한 후 익월 지원금 적립 기간에 소급적립됩니다.

*** 적립 일정은 매월 지원금 적립 일정 참고**

**예시.** 예탁금 잔액에 따른 적립 기준

(사례1)

- (3월 예탁금 잔액) 5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 3월 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인해 3월 전부 미적립

(사례2)

- (4월 예탁금 잔액) 6,0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4월 적립 예정액) 4,500,000원
- 소급적립이 필요한 3월부터 우선 적립, 4월 예탁금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적립

(사례3)

- (4월 예탁금 잔액) 12,000,000원
 - (3월 적립 예정액) 3,000,000원 (4월 적립 예정액) 4,500,000원 (5월 적립 예정액) 2,500,000원
- 예탁금 잔액이 충분하므로 3~5월 전부 적립

Q4 근로소득장려금 오류예탁(과예탁, 타 계좌이체 등) 시 처리 방법은?



Answer.

- 과예탁으로 예탁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탁반환요청 공문을, 타 계좌로 예탁금액을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타 계좌로 옮기는 전환공문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반환 및 전환요청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약 5일 정도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공문 상 필요내용 누락 등 발생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3 오류 예탁 시 등 처리요령

- ✎ 기존 자산형성지원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과예탁 등으로 예탁반환 필요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처리

Q5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가능한지?



Answer.

- 신규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청년내일저축계좌)은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단일계좌에 보장 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불가하며, 예탁된 사업비는 사업 구분없이 적립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사업별 예산을 구분하여 정산은 불가합니다.
- 다만, 사업별 집행실적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실적 및 정산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Q6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집행잔액, 이자 및 환수액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반납 요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Answer.

-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자체(시·도)로 보고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 정산(또는 결산) 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비 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진행합니다. 반납요청 시에는 공문에 반납 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불가)를 첨부합니다.



Q7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잔액 등에 대해 반납요청 시 반납 요청금액에 대해 원단위금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Answer.

- 원단위 절사 여부는 각 지자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따라 신청합니다.
- 다만, 원단위를 절사하여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반납 대상 금액(반납 예정액)과 반납 요청금액의 차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VI. 자산형성포털

1. 가입관련


Q1
자산형성포털 가입 대상자는?

Answer.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적금 개설 완료자) 본인만 자산형성포털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자산형성포털 가입 방법 및 절차는?

Answer.

- 인터넷에 '자산형성포털'을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간편인증(네이버 또는 디지털 원패스 인증)으로 가입자 본인 여부 확인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자산형성포털의 MY서비스 이용 대상은?

Answer.

- MY서비스는 자산형성포털 회원 전용 메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금 확인, 교육 이수 등 MY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가입자가 네이버 인증으로 자산형성포털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nswer.

- 네이버 인증을 통한 가입은 네이버 가입자 정보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정보(가입자명, 생년월일)이 동일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가 네이버 인증으로 회원가입했으나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는?



네이버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 자산형성포털 가입 시 사용한 계정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에 사용한 네이버 계정 탈퇴 시 해당 인증수단 사용이 불가하며 자산형성포털 회원탈퇴 후 재가입하여 새로운 인증수단 등록이 필요합니다.



Q5

자산형성포털 회원탈퇴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가입정보]에서 하단의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유사 질의응답



자산형성포털 로그인이 안되는데 탈퇴 후 재가입 가능한지?



자산형성포털 로그인이 안 될 경우, 가입자가 직접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자산형성포털 탈퇴 의사 표명 시 탈퇴 처리 가능하며 탈퇴 완료된 이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정보·지원금 확인

Q1 가입자 본인 정보 수정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에서 가입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수정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가입정보 > 정보수정]에서 본인인증 완료 후 수정 가능합니다.
- 그 외 정보(가입자명, 지자체 등)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 정보 전송 시 자산형성포털에 반영됩니다.
 - * 가입자명 수정: 행복e음에서 가입자명 변경 정보 전송 시 반영
 - * 지자체 수정: 행복e음에서 전출·입 처리 시 반영

Q2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은 확인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저축현황 조회]에서 본인적금 및 지원금 생성·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교육 수강 완료 시 자산형성포털에서 이수내역 확인 방법은?



Answer.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 교육관리에 반영됩니다.

3. 적립중지 및 해지


Q1
적립중지 신청 및 해제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적립중지관리]에서 적립중지 (해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일의 7일 이후 날짜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승인 이후 확정됩니다.
- * 현재 적립중지 (해제)신청 기능 구축 중, 추후 기능 개통 예정


유사 질의응답

적립중지(해제) 신청 오프라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자가 사례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와 유선 상담 후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군입대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적립중지 신청/해제 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지?


군입대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적립중지 신청/해제는 온라인(비대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는 반드시 사례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와 유선 상담 후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지자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Q2
적립중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적립중지관리]에서 적립중지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완료된 적립중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해지 신청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해지관리]에서 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해지 신청 기능 구축 중, 추후 기능 개통 예정



유사 질의응답



해지 신청 오프라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자는 사례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와 유선 상담 후 해지 신청서 및 그 외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해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해지관리]에서 해지 현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 및 해지 신청서 등 각종 서식 확인 방법은?



Answer.

- [자산형성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2

희망저축계좌 I

I
가입

II
유지

III
해지

02. 희망저축계좌 I



I. 가입


Q1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신청이 가능한지?

- 자활급여특례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대상자임


Answer.

- 네, 가능합니다.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수급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합니다.


Q2

동일 주소지에 3인 가구 중 자녀(1인)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이 되어 남은 가구원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가구원 수는?

- 통장 가입자는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가구원이며, 자립지원 별도가구인 자녀(1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상태임


Answer.

-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보장 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하므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원 수인 2인으로 산정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 가입자인 자녀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 중지된 경우 유지할 수 있는지?

! 가입자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시 탈수급으로 간주하며,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사업유지 및 지급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Q1, Q2 관련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 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 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 이행급여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15.7월 이후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17년 7월 최종 종료되어 희망저축계좌 I 신규 진입가구 없음. 기존 이행급여특례 상태에서 가입한 대상의 경우 기본 희망저축계좌 I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지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II. 유지



Q1

5인 가구이며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 해당 자녀가 해외로 간 경우에도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Answer.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희망저축계좌 I 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합니다.



참고. 수급자격 유지 및 변동 시

- ☞ 4인 가구에서 수급 자격 변동 유무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시)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생성
- (수급 자격 변동 시) 탈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 ① 최근 3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유지 및 지급해지 선택 가능
 - ②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Q2**

희망저축계좌 I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Answer.**

- 통장 가입자(예금주)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생성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 I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Q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이 누락된 경우 소급이 가능한지?



Answer.

● 네, 가능합니다.

-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준에 적합하면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희망저축계좌 I 사업만 적용(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지자체에서 생성하지 않음)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으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가입자와 상담결과 압류해제가 불투명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어렵다고 안내한 후 중도해지요청을 하지 않은 사례임

- 그 결과 2개월 후 가입자의 통장 압류해제가 해결된 경우 지난 2개월 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기간동안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압류 해제를 확인한 후 본인적립금을 불입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기준에 적합하다면 소급하여 장려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Q4**

통장가입한 달에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된 경우 처리방법은?

**Answer.**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근로소득장려금이 미생성 된 경우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간에 누락된 첫 월 장려금을 추가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첫 월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미달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이 미생성된 경우에도 통장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중지 신청없이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개월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Q5**

근로소득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금액을 생성해야 하는지?

**Answer.**

- 이력관리를 위해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기준 미달인 월에도 본인저축액 납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되는지?



유지기준 소득하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은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생성 대상자이나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였을 경우 수정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이미 행복e음상 근로소득장려금을 생성하여 전송완료되었을 경우 수정 및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당월 미지급된 장려금을 포함하여 익월 지원금 정보 생성 기간에 소급하여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Q6

탈수급 이후 소득상한 이하로 사업 유지 중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 중 일부 가구원 변동(군입대, 통장가입자 전출 등)이 있는 경우 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 수급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Q7

희망저축계좌 I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추후 신고시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Answer.

- 탈수급 후 본인적립금은 계속 납입하였으나 소득자료 미제출시 그 달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0원으로 생성합니다.
- 또한 소급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6월 연속 미신고시 소득 요건 미달로 중도지급해지 사유가 됩니다.
 - 다만, 지자체가 인정(지자체 착오, 과실)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적립할 수 있습니다.

**Q8****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Answer.**

- 탈수급 후 유지 가능하나 최근 3월 평균 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시 중도지급해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Q9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가 탈수급 후 소득확인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생성하는지?



Answer.

- 소득조사시 ①타 보장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하고, ②탈수급자 소득 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를 3월마다(매년 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1회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탈수급 후 소득신고서 제출 전까지는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을 활용하고, 소득신고서 제출 시에는 평균 3개월 소득을 반영하여 생성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III. 해 지


Q1

희망저축계좌 I 에 가입한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 종결 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환수해지 대상자인지? 그렇다면 몇 개월 이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되는지?


Answer.

- 자활근로 종결 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에 미달시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 다만,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중지가 가능하므로 구직활동이 필요한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지?


Answer.

- 가입자 본인이 사망시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 탈수급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 환수해지 처리 해야하나 가구원이 6개월 이내 탈수급하여 가구원이 지급해지 요청할 경우 적립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탈수급 시점 이후 사망 시 중도지급해지 처리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유예기간(6개월) 내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내 탈수급은 지급해지 필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가 가능하며,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Q3

자활특례자, 이행특례자가 통장에 가입하여 유지 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Answer.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난 경우에만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지급요건 충족시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수급자 자격은 생계·의료수급자 및 특례수급자로 분류되며, 특례수급자의 경우 특례수급 자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탈수급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특례기간이 남았음에도 지급해지를 위해 본인 포기로 종료할 경우 지급해지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특례 자격을 벗어나는 경우 예시) 자활급여 특례적용 중지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마)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3) 참고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기존 이행특례수급자에 한함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 충족
-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 인정 불가



Q4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부지급해지 후 희망저축계좌 I에 가입한 경우, 일부지급해지가 가능한지?



Answer.

-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성공금 수령 시 희망저축계좌 I 만기성공금 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일부지급해지를 제외한 환수해지 또는 지급해지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	타가구원
희망키움통장 I (가구)	참여중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1회)	
	환수해지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1회)	
	환수해지	○	



Q5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가입한 가입자가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적용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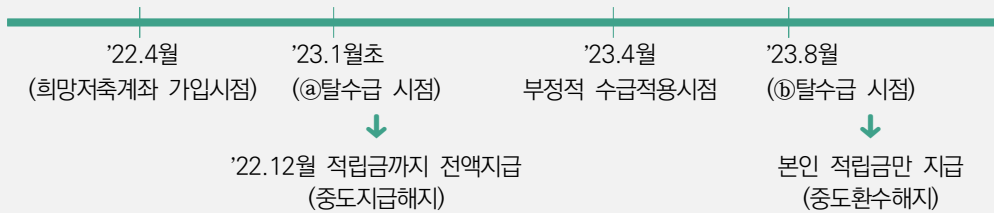
Answer.

- 부정수급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정수급 적용 시점이 통장 가입자가 탈수급 이전인 경우 중도환수해지 처리하고 본인적립금만 지급합니다.
 - 부정수급 적용 시점이 탈수급 이후인 경우 중도지급해지 처리하고 탈수급 시점까지 적용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참고. 부정수급 예시

예



**Q6**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에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Answer.**

- 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자와 연락하여 희망저축계좌 I 해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대상자가 통장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해지신청 없이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해지사실을 고지한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Q7**

희망저축계좌 I 만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탈수급 소득요건에는 미달되나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금액을 기타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Answer.**

-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지급해지의 경우 해지 전 탈수급하여야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Q8

희망저축계좌 I 가입가구가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nswer.

-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 I 지급요건 충족
-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 인정 불가

**Q9**

통장 가입자가 혼인으로 가구원 수 변동되어 탈수급되고, 남은 가구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되는지?

**Answer.**

- 가입자 본인이 탈수급하였으므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이하인 경우 사업유지 또는 지급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가 지급해지 시 남은 가구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여도로 인하여 수혜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희망저축계좌 I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10**

탈수급 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Answer.**

- 탈수급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참고.** 3개월 평균소득 예시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3인가구	근로(사업)소득	3,500	4,000	4,500	5,000	5,500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4,000	4,500	5,000

- 통장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1월 3,500천원, 2월 4,000천원, ... 5월 5,500천원이면 최근 3개월 소득은 3월 4,000천원, 4월 4,500천원, 5월 5,000천원이 됩니다.
- 이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소득상한액인 **4,434천원**을 초과한 달은 4월이므로 3월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포함)을 전액을 지급하고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Q11

희망저축계좌 I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nswer.

-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합니다.
-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므로 본인 적립금과 누적된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 만기지급해지 사유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6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최초 약정이율

**Q12**

희망저축계좌 I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유지기준(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누적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지?

**Answer.**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은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만, 탈수급 이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하여 중도해지사유 발생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미납 안내를 고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Q13**

탈수급 후 소득초과로 인한 중도 지급해지 시 탈수급장려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Answer.**

- 탈수급장려금은 본인이 해지를 신청한 시점에 지원됩니다.
- 해지시점까지 탈수급 자격 유지를 하여야 하며, 탈수급 후 유지기준(소득상한) 이하이더라도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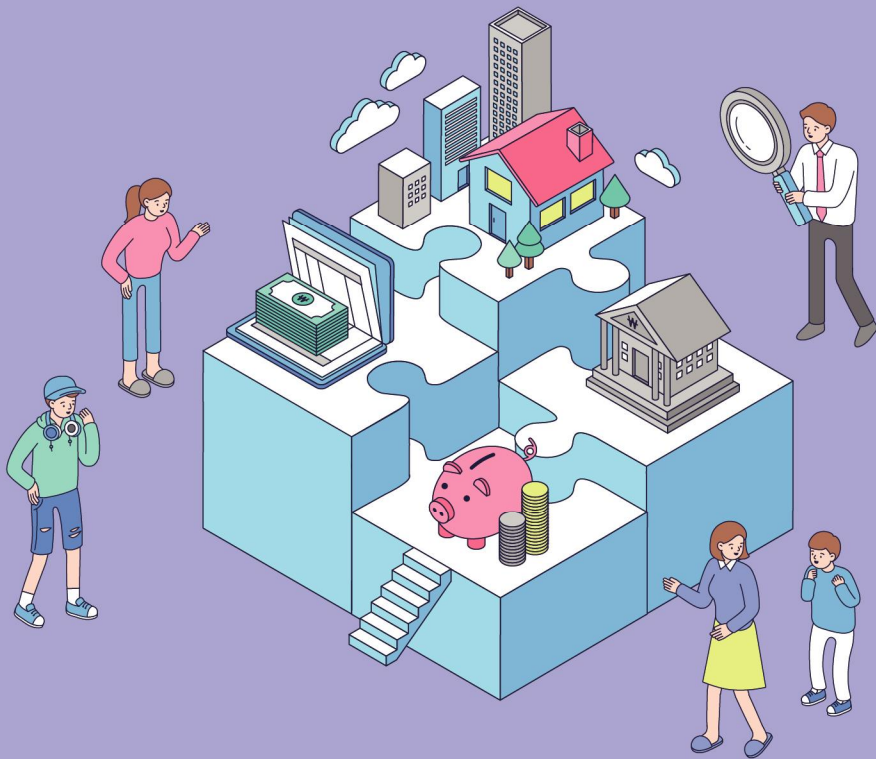
**Q14**

자활사업 참여자가 희망저축계좌 I 가입하고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자활특례전환 또는 탈수급을 했을 경우 자활참여는 바로 종료인지? 아니면 자활 종료 없이 탈수급 요건 충족 시 희망저축계좌 I 만 지급해지 가능한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 I 은 자활근로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탈수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3

희망저축계좌Ⅱ

I
가입

II
유지

III
해지

03. 희망저축계좌Ⅱ



I. 가입

Q1 신청자가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할 수 있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는 생계,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받고 있는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수급을 받는 대상자는 희망저축계좌Ⅰ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질의응답

?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할 수 있는지?

!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희망저축계좌Ⅱ를 가입한 가구의 가구원이 이혼, 이사 등으로 인하여 보장가구에서 분리된 경우, 분리된 가구원이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할 수 있는지?

**Answer.**

-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단위 지원 사업으로, 중간에 가구원이 분리되더라도 신청 당시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타가구원
희망저축계좌 I (가구)	참여중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	
	환수해지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참여중	×	
	지급해지	×	
	환수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지급해지	○	○
	환수해지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Q3

신청자의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만 특례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적합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교육급여를 수급받지 않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되므로 대상자의 신청유형을 확인하여 결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유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생계, 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불가



Q4

4인 가구에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받아 생계·의료급여는 자녀를 제외한 가구원만 보장하고, 주거급여는 자녀를 포함하여 보장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희망저축계좌Ⅱ를 신청할 수 있는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 다만, 별도가구로 생계·의료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된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Q5

모(母)와 자녀(청년) 2인 가구로 자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모(母)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하고, 자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지?



Answer.

- 네, 가능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모(母)의 소득이 없더라도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母)의 명의로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한 경우 자녀는 자녀의 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예시**

-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Q6**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타 가구원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Answer.**

- 주거급여 보장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타보장을 받고있는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로 신청

**유사 질의응답**

2인 가구가 주거를 달리하고 있지만 타보장에서 동일가구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을 경우, 2인 가구로 보장가구를 산정하여 지원하면 되는지?



타보장에서 2인으로 보장가구 산정하여 지원할 경우, 통장 사업에서도 동일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II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Q7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무엇인지?



Answer.

- 희망저축계좌Ⅱ는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유사 질의응답



희망저축계좌Ⅱ 확인조사의 경우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타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고,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서비스를 단독으로 신청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소득 자료 보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Q8**

농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이 가능한지?

**Answer.**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작성한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 확인 후 소득을 직권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II. 유지

 **Q1** 가입자가 직접 자립역량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이수해도 인정 가능한지?



Answer.

- 네 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단위 지원 사업으로 동일 가구 내 타 가구원이 이수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 * 단, 보장가구원 확인 절차 필요



유사 질의응답

 지급해지 요건 중에 자립역량교육 이수 조건이 있는데 가입자가 아닌 신청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도 되는지?

 희망저축계좌Ⅱ는 개인 통장이 아닌 가구 단위 통장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및 신청자 외에도 보장 가구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2** 가입자가 자립역량교육 미참여 시 통장을 유지할 수 없는지?



Answer.

- 자립역량교육 기준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통장유지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보완할 경우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III. 해지


Q1

확인조사 기간이 아닌데 가입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넘는다며 지급해지 신청을 한 경우 중도지급해지 처리가 가능한지?


Answer.

- 해지신청시 아래 중도지급해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당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 교육 이수기준 충족,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참고. 중도 지급해지 시 교육 이수 권고 기준

〈 교육이수 횟수(누적) 기준(권고) 〉

최소 이수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비고
희망저축II· 청년내일	총 4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청년내일 LMS 10시간 교육 필수

* 통장가입 기간(3년)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이수가 가능하나 중도지급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기간별 이수기준을 지급조건으로 적용



Q2

3년 만기 전이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적금을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Answer.

- 만기 전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만기 전이라도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재가입 불가)의 경우 중도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본인 적금을 중도인출(분할해지) 가능하니, 중도인출을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구분	해 지 사 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해지(가입자 사망 전,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단, 재가입 불가)		• 최초 약정이율
환수 해지	•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자립역량 교육 이수 기준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Q3**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가입자가 중도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중 결정할 수 있는지?

**Answer.**

- 네,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나, 해지 통보 받기 전 지급해지 필요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해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도지급해지 이후 희망저축계좌Ⅱ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교육 이수는 지급해지의 필요요건으로 가입자 사망 전 보장가구원 중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가입자 사망 이후 보장가구원 내에서 교육 이수하더라도 지급해지 기준을 이룬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중도 지급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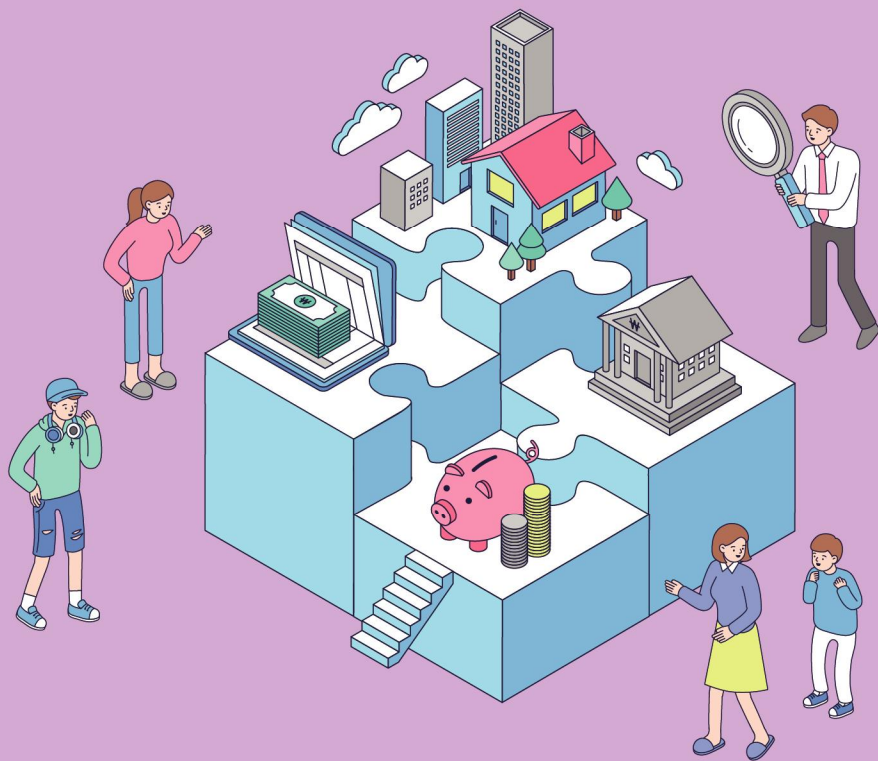
- ②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 ③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단, 재가입 불가)

✔ (환수해지)

-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4

청년내일저축계좌

I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관련

II

가입

III

유지

IV

해지

04. 청년내일저축계좌



I.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관련


Q1

청년도약계좌도 '23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 가능한지?


Answer.

-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추후에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므로 향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금융위원회에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가입자가 추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Answer.

-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모두 가입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①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와의 관계
 - ②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와의 관계
 - 첫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므로 향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두 사업 모두 금융위원회 주관사업에 해당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II. 가입

1. 지원대상

 **Q1**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중 타보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nswer.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조사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우선 신청은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만 34세~만 39세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연령으로 인하여 가입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Q2**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유형(생계·의료·교육·주거 등)과는 별개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단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Q3****군입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Answer.**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 중인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인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역특례연구원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 급여는 가구의 소득(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가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요원의 급여는 현역병에 준하는 급여로 출퇴근 여비나 중식비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사회복지요원이 급여 외 군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 반영여부	비고
현역병 급여	X	
방위산업체 급여	✓	30% 소득 공제
사회복지요원 급여	X	개인소득(30% 소득 공제)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검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

**Q4****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는지?****Answer.**

-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원 수 상관없이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신청자=가입자)

**Q5**

4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가 희망저축계좌 I 가입 중이며, 해당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가구에 청년이 2명인 경우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희망저축계좌 I·II 가구의 청년은 가입 가능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불가
- ※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중복관리 대상사업

**유사 질의응답**

4인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일 때, 해당 청년의 가구원 중 부(父)가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 신청 가능한지?



해당 가구 및 가입 희망자가 희망저축계좌의 가입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예시〉

- 희망저축계좌 I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Q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Answer.

- **관련문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031(2023. 4. 20.)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관련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개선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별도 생계 구성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자매 등 재산조사 미 실시)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표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30세 미만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	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	좌동
30세 미만 중위소득 50%미만 소득활동	원가구를 포함하여 보장가구 구성	청년(가구)만 보장가구 구성

-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2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①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②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 ③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④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⑤ 직업전문학교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참고. 보장가구 구성 확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 타 보장외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관련)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1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①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개별가구 보장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보장기준 적용

예)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받는 가구의 청년이 생계급여 3인으로 보장받고, 의료급여는 4인으로 보장받는 경우, 보장가구는 최대 가구원 수로 적용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적용된 청년의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전체가구 기준을 적용

예) 3인 가구에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로 부모만 별도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3인 가구로 적용

※ 위 사항 외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Q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에서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 관리-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참고.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Ⅰ·Ⅱ유형 공통)」

1 기타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 * 일하는(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재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제도인 희망·내일·청년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보유자는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 * 근속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보유자는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급 불가(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마이스터 통장) 등)

2. 소득기준

Q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산출기준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입 기준	산출 기준
가구 소득	(차상위 이하)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55p
가구 재산	(공동)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산출: 재산의 총액(일반재산+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참고) 2023 긴급복지사업안내 재산조사(p77~)
개인 소득	(차상위 이하)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근로·사업소득 반영시점 ①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 공적자료 우선 반영이 원칙 - 공적자료 반영 시점 차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월소득 증빙 후 반영 가능 ② 공적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월소득 반영 원칙(전월소득이 없는 경우 이번차수 신청 불가) → 임시일용근로소득의 경우 3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전월 소득으로 적용 - ex1) 4월에 첫 일용근로 100만원, 5월 신청 → 4월 소득 100만원으로 적용으로 신청 가능 - ex2) 2월 100만원, 3월 100만원, 4월 300만원 → 4월 소득 300만원 적용으로 신청 불가 - ex3) 5월 신규취업하여 공적자료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전월 소득 없으므로 5월 신청 불가



Q2

신청자가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확인 기준은?



Answer.

-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 기타 사업소득은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인정하며, ④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자체 직권으로 소득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을 인정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3

신청자가 대학원생 연구비 등 기타 소득만 발생 시 신청 가능한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 인정은 근로·사업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인정되는 소득 예시〉
 -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이 외의 소득 발생 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Q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참고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필수서류(공통): 복지 서비스 신청을 위한 서류로 빠짐없이 제출받아야 함
 - * 복지로 신청 시 필수서류(공통) ①~⑥번은 화면에 입력하도록 구현되어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대상자 제출 필요
- 소득증빙(필수):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자 유형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 재산조사, 부채관련: 신청자 가구의 가구소득, 가구재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자 가구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 해당 항목의 서류는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받지 않아도 됨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신청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로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을 적용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 ※ 해당 항목의 서류는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받지 않아도 됨

〈현장접수 시〉

- 지자체는 신청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공통) 서식을 제공하고 소득 증빙서류(필수), 재산 조사관련, 부채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를 받아야 함

〈복지로 신청 시〉

- 복지로 신청은 대리 신청 불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 (구비서류등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필수), 재산 조사관련, 부채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는 복지로 신청 마지막 단계인 [복지서비스신청 구비서류등록-구비서류작성/첨부] 단계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파일(JPG, JPGE, GIF, PDF)로 반드시 등록



참고1. 복지로 복지서비스신청 구비서류등록 화면

로그아웃
인용서 내보내기
복지소식
복지로 소개
고객센터
문의하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복지자금
맞춤형급여연계(복지멤버십)

자산형성지원(영·유아(자녀)육제비)
구비서류 다운로드

첨부서류
*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대상자
입
서류명
재직증명서

파일 선택
미리보기
+
-

대상자
입
서류명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파일 선택
미리보기
+
-

대상자
입
서류명
부세증명금

파일 선택
미리보기
+
-

대상자
입
서류명
기타부세증명서류

파일 선택
미리보기
+
-

대상자
입
서류명
기타재출서류

파일 선택
미리보기
+
-

이전

영시 저장

제출하기



참고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서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이 어가별 위판기록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참고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 당 자 만 제 출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Q2**

B지역에서 타보장(주거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지원 중이나 신청자는 A지역, 부모 및 타 가구원은 B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Answer.**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자(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참여가 가능하나, 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을 경우 B지역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4. 심사


Q1

신청자가 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군입대하였을 경우 적합으로 결정처리해도 되는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근로·사업소득으로 유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보장 결정 전에 입대했다면 가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문의 안내 시 보장결정 전 입대한 경우 지원대상에 적합하더라도 최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2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동시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Answer.

- 소득재산조사 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가구원 변동시점에 소득재산조사를 재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당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결정처리 심사 시 자격에 대한 기준을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접수상태이며 소득조사 전이라면 전출기관에서는 즉시(또는 수시) 전입기관으로 자료이관 (공문시행)하여 전입지에서 소득조사 및 결정처리를 합니다.

**Q3**

심사표 항목 중 저축지속가능성(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Answer.**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하며, 동일 직장이 아니어도 총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예시.** 경제활동 기간 산정

- ① A직장에서 6개월, B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총 12개월로 인정
- ② A, B직장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월은 중복으로 처리
 - A직장(1~6월), B직장(5~12월) 근무한 경우 총 12개월로 인정

**Q4**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후 동점자 발생 시 어떤 대상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Answer.**

〈최우선 적용 사항〉

- 원칙상 참고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 기준에 따라 동점일 경우 ①기준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하지만, 지자체 예산상황 및 모집인원 초과 시 연령이 도래되는 대상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사업신청가능 연령이 신청월 기준 1년 미만으로 남은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합니다.



예시1. 점수가 동일하나 모집인원의 초과로 1명의 대상자만 선정해야 하는 경우

- 아래의 예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점수가 높은 만 31세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고려하여 신청 월에 만 35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평가기준	만 31세	만 35세가 되는 자
총점	70점	70점
기준 중위소득	35점	30점
가구특성	0점	0점
저축지속 가능성	25점	20점
대상연령	10점	10점

※ 위 예시는 담당자의 이해를 위해 작성된 예시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따른 가입연령 상이하여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 최우선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동점자 처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안))>에 따라 동점일 경우 ① 기준 중위소득, ② 가구특성, ③ 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예시2. 심사항목의 점수가 전부 동일한 대상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여 30점을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만 25세를 선정

평가기준	만 25세	만 27세
총점	60점	60점
기준 중위소득	30점	30점
가구특성	0점	0점
저축지속 가능성	25점	25점
대상연령	5점	5점
참고사항	기준 중위소득 52%	기준 중위소득 60%

※ 위 예시는 담당자의 이해를 위해 작성된 예시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따른 기준은 상이하므로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Ⅲ. 유지

1. 지원금 기준


Q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본인 소득이 월 10만원 이하 발생 시에도 근로소득공제금이 지원되는지?


Answer.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기준은 ①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②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③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이므로 본인 소득이 10만원 이하 발생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공제금

- ①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 ③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Q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였으나, 유지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지원할 수 있는지?

**Answer.**

-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 지원됩니다. 가입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더라도 근로소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응답**

가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으로 가입하였으나, 유지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지원금 기준으로 지급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 이하 ↔ 중위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기준은 유지됩니다.

- 따라서 중위50% 이하의 지원금 기준으로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Q3**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nswer.**

-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을 초과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적금 납입 시 매칭되는 지원금입니다.
- 자활사업안내(I) 지침에 따르면 Gateway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훈련수당의 성격으로 세법상 근로소득 적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Gateway 과정 참여자는 통장 사업 가입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공제금은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4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적립할 수 있는지?



Answer.

-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단, 청년 본인이 조건 불이행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2. 적립방법



Q1

가입자 가구에 전월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당월에 과지급 분 차감하여 생계급여 미지급 예정으로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예시) 3월 생계급여 과지급, 4월 과지급 분 차감하여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Answer.

-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금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3. 자격요건


Q1

가입 당시 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근로기준 상 소득하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유지 시에도 차상위 이하(10만원 이상), 차상위 초과(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는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은 정해져 않으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차상위 이하(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 공제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하여야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워킹홀리데이의 사유로 해외 출국한 가입자가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다고 확인되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의응답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Answer.

- 워킹홀리데이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출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중의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발생 여부는 가입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며,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소득이 없는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의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법 제22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조사 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이 초과된 자는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을 중지함

-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합산기간(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급여 중지 기간도 포함됨에 유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며,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Q3****가입 이후 정기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근로·사업소득 기준은?****Answer.**

-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으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청년내일저축계좌)' 의거하여 소득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 * '23년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434,816원 이하(차상위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원 및 사무소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Q4

확인조사를 통한 중도지급해지(유지기준 소득상한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 제출 시 유지할 수 있는지?



Answer.

-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유예는 소득조사를 통해 환수해지 대상자로 확인된 가입자 중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득초과자의 경우 확인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근로·사업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지급해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중도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4. 적립중지

Q1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할 경우 다음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 적립중지 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② 중도환수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유사 질의응답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없이 입대한 경우 지자체에서 입대사실 확인(예: 입영통지서 등)되면 직권으로 중지신청 가능한지?**

 직권으로 중지신청은 불가합니다. 가입자는 군입대 전 자격확정을 주관하고 있는 지자체로 적립중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행복e음에 적립중지 등록하여야 적립중지가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만약 가입자가 적립중지 신청없이 군입대를 한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조건 미충족 확인 시점에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가입자가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없이 입대한 경우 보장가구원임이 확인된 가구원 내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군입대 전 가입자가 직접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군입대 적립중지 미신청 후 입대하였더라도, 가입자의 보장가구원이라면 군입대 적립중지를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군입대 적립중지 미신청 기간은 적립중지 기간으로 소급설정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대리신청 모두 소급설정 불가

 <예시> 군입대 적립중지 미신청 후 보장가구원이 대리 신청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 (입영일자) '23. 1. 17.

* (적립중지 신청 및 등록) '23. 4. 18.

→ 2월 3월은 적립중지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고 적립중지 등록한 일자인 '23. 4. 18.부터 2년 등록됨



Q2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사용가능한데 1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적립중지는 1년 단위로 설정 불가하며, 최초 적립중지 등록시 2년으로 일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할 수 있다는 제도를 고려하여 최대 2년까지 적립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적립중지 1년 경과 후 가입자 요청으로 적립중지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이후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재요청 시 잔여 기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유사 질의응답



가입자는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후 일반 적립중지(6개월)도 사용할 수 있는지?

- 가입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대상 적립중지(2년), 일반 적립중지(6개월)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가입자 적립중지(2년)는 적립중지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연장되지만, 일반 적립중지(6개월)는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적립중지 기간동안 정부지원금은 미지원 됩니다.

**Q3****가입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중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Answer.**

- 육아휴직,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발급처)를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인터넷 발급 가능)
 -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이력서(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택1, 임신확인서(병원)
 - **(출산으로 인한 퇴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 이력서(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택1,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사 질의응답****육아휴직 신청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도 육아휴직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는지?****육아휴직으로 인한 적립중지는 본인,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 시 적립중지는 여성 가입자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근거)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IV. 해지



Q1

유지 중에 만 34세(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는지?



Answer.

- 신청 당시 만 34세(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원대상별 가입연령 기준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Q2**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유지기준(소득상한)초과로 인한 부적격 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nswer.**

-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로 확인되었을 경우 중도지급해지 대상으로 결정되며,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 단,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 * 지급요건: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유사 질의응답**

소득초과로 인해 중도 지급해지 대상자이나 소득초과 발생 전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하였을 경우 지급해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중도 지급해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득초과 이전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례로 환수해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해지해야 하는지?



Answer.

- 통장 가입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이하일 경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와 별개로 통장의 유지기준(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중도지급해지
대상자가 됩니다.
-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 유지기준(소득상한)은 상이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사 질의응답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4,500,000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3,500,000원)인 경우
유지할 수 있는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이하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로 소득인정액(3,456,000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4,450,000원)인 경우
유지할 수 있는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소득상한) 초과로 중도지급해지 대상입니다.

- 다만, 차상위 이하/차상위초과 유지기준(소득상한)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대상자별 금액을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해지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Answer.

- 통장 해지(지급 또는 환수)를 원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해지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 ▶ (환수해지) 해지신청서
 - ▶ (지급해지)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참고. 지급 및 환수해지 절차

환수해지

(가입자) 해지신청서 제출 → (지자체) 해지신청서 확인 및 해지 등록 → (개발원) 지원금 계좌 해지 → (가입자) 본인 적금 해지

지급해지

(가입자) 해지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자체) 해지신청서 확인 및 해지 등록 → (개발원) 지원금 계좌 해지(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 → (가입자) 본인 적금 해지, 지원금 입출금 계좌에서 지원금 인출 가능

Q5 지급해지 신청 시 사용용도증빙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Answer.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해지신청 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사항으로 자격증 취득 및 사용용도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청년저축계좌(‘20년 모집~‘21년 모집 종료)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인쇄처	라운기획 (044-999-3897)